

Evidence #1 Economic evaluation with 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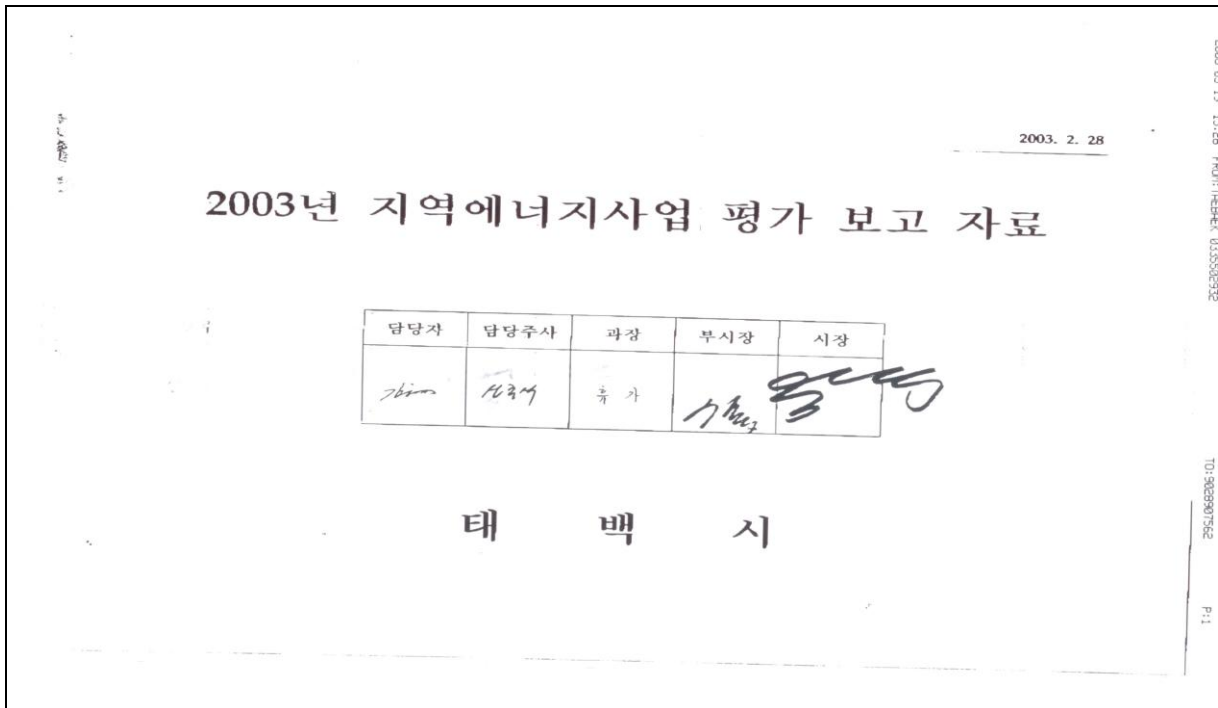


Figure 1 The coverletter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original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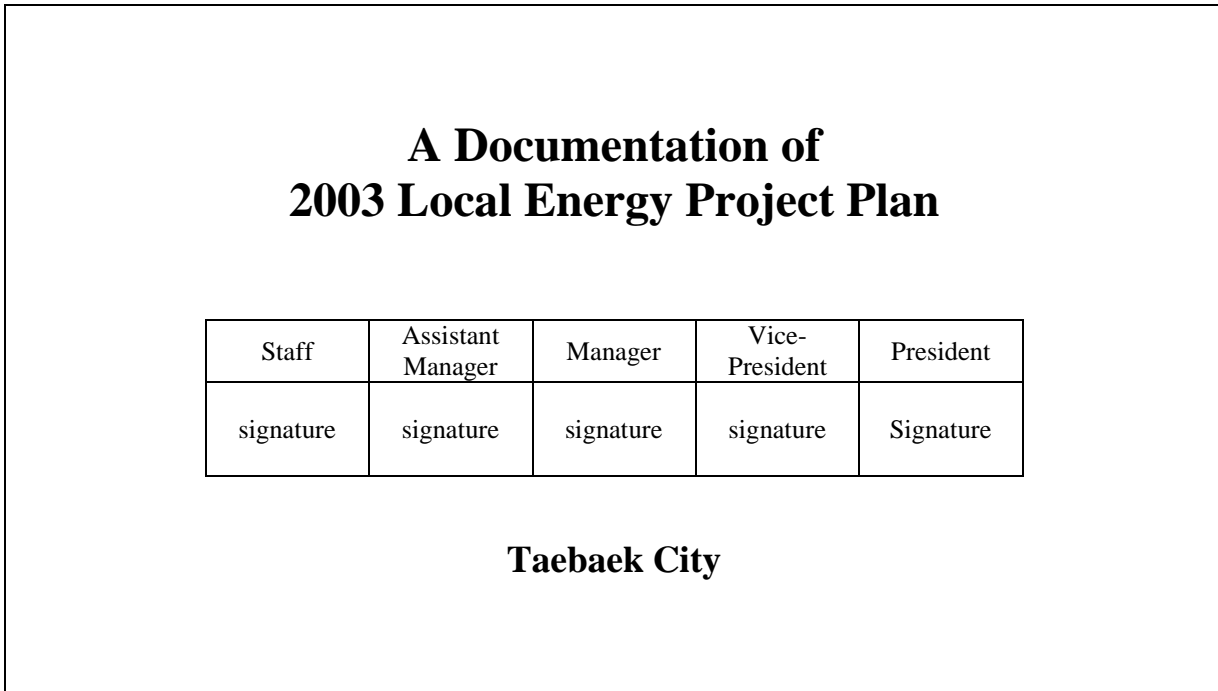


Figure 2 The coverletter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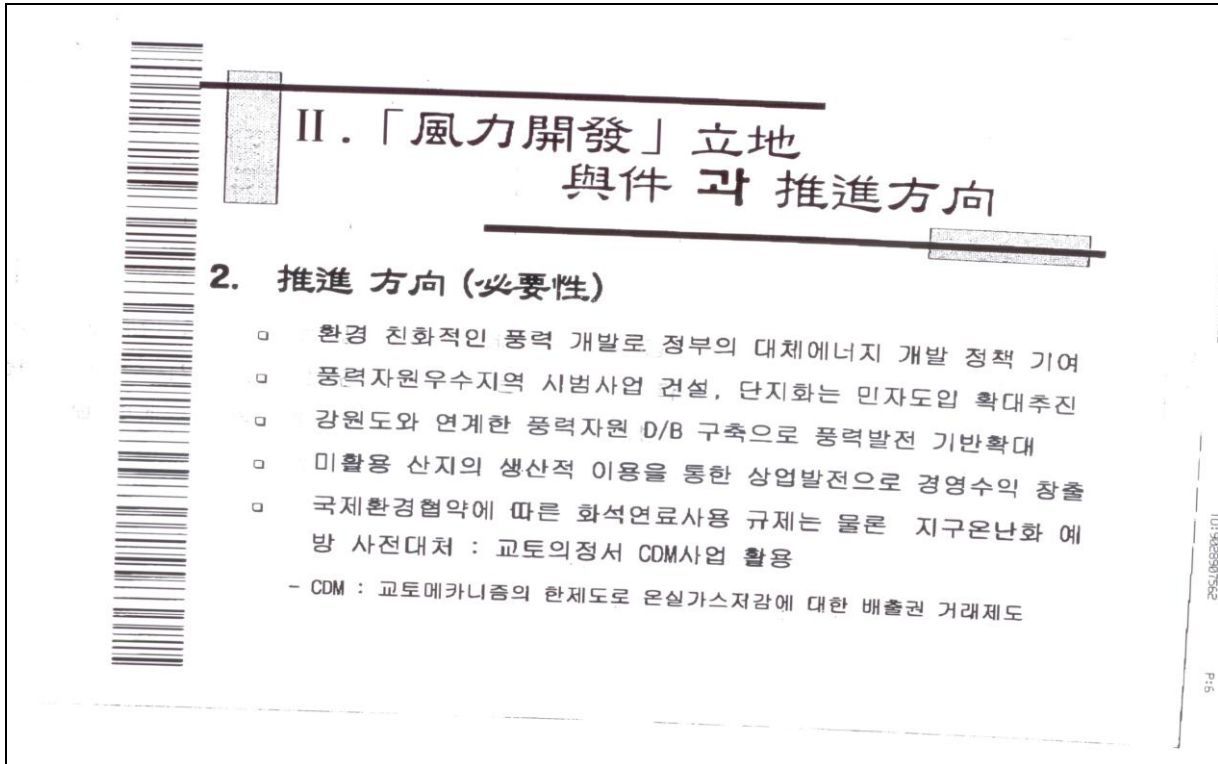


Figure 3 The sixth page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original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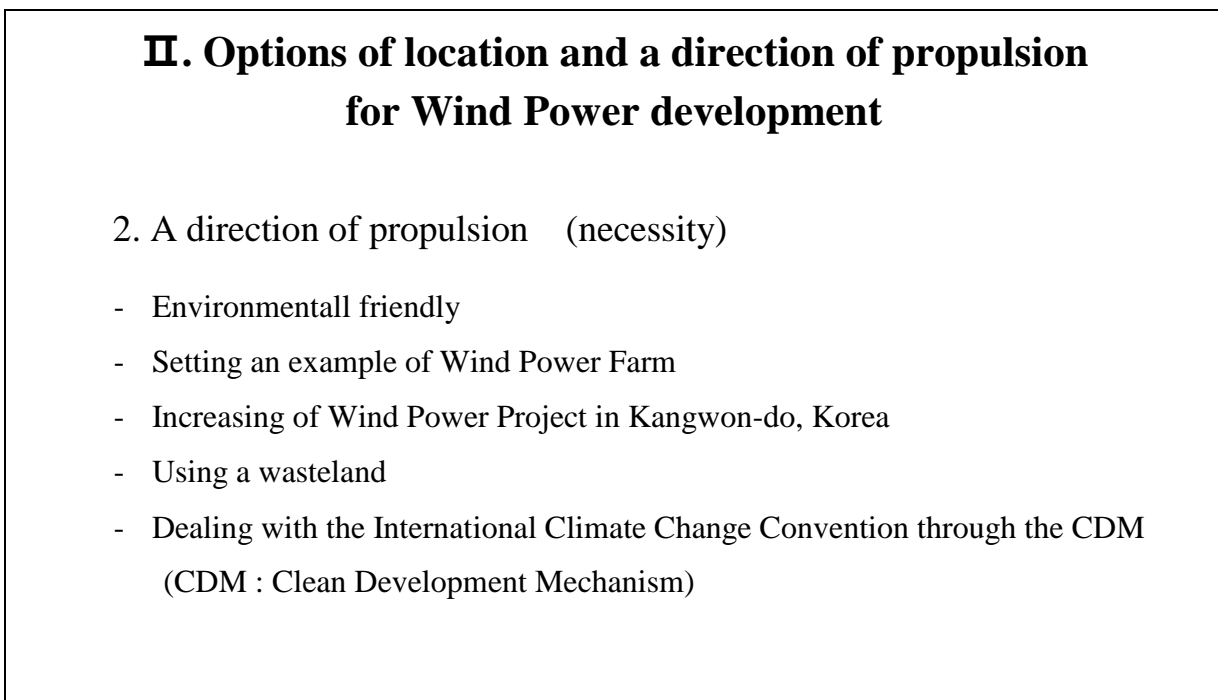


Figure 4 The sixth page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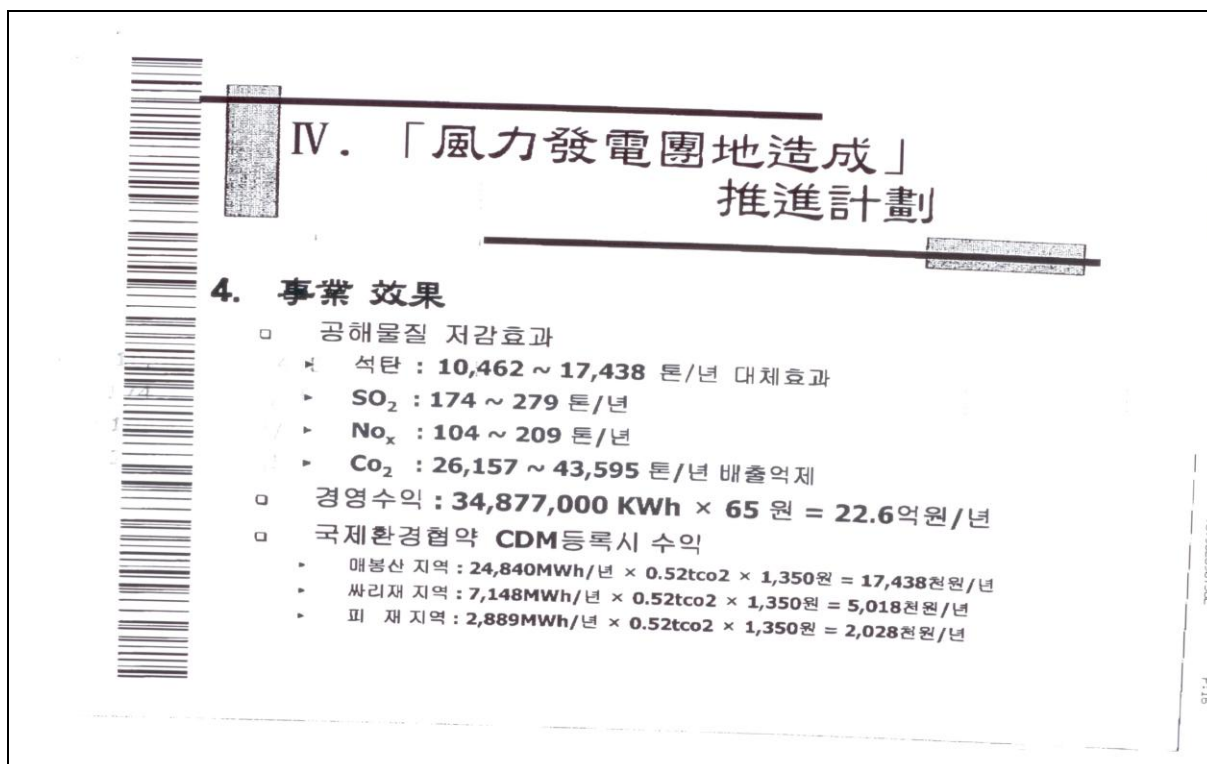


Figure 5 The sixteenth page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original copy)

IV. A Plan for composition of Wind Power Farm

1. Effectiveness of Wind Power Project

- Reduction of pollutions
 Replacement of coal : 10,462 ~ 17,438 ton/year
 SO₂ : 174 ~ 279 ton/year
 NO_x : 104 ~ 209 ton/year
 CO₂ : 26,157 ~ 43,595 ton/year
- Revenue of electricity generations : 34,877,000 kWh × 65 won = 2.26 billion won/year
- Revenue of CERs
 Mt.Maebong : 24,840 MWh/year × 0.52 tCO₂ × 1,350 won = 17,438,000 won/year
 SSarijae : 7,148 MWh/year × 0.52 tCO₂ × 1,350 won = 5,018,000 won/year
 Pijae : 2,889 MWh/year × 0.52 tCO₂ × 1,350 won = 2,028,000 won/year

Figure 6 The sixteenth page of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the translation)

Evidence #2 Decide to proceed the project as a C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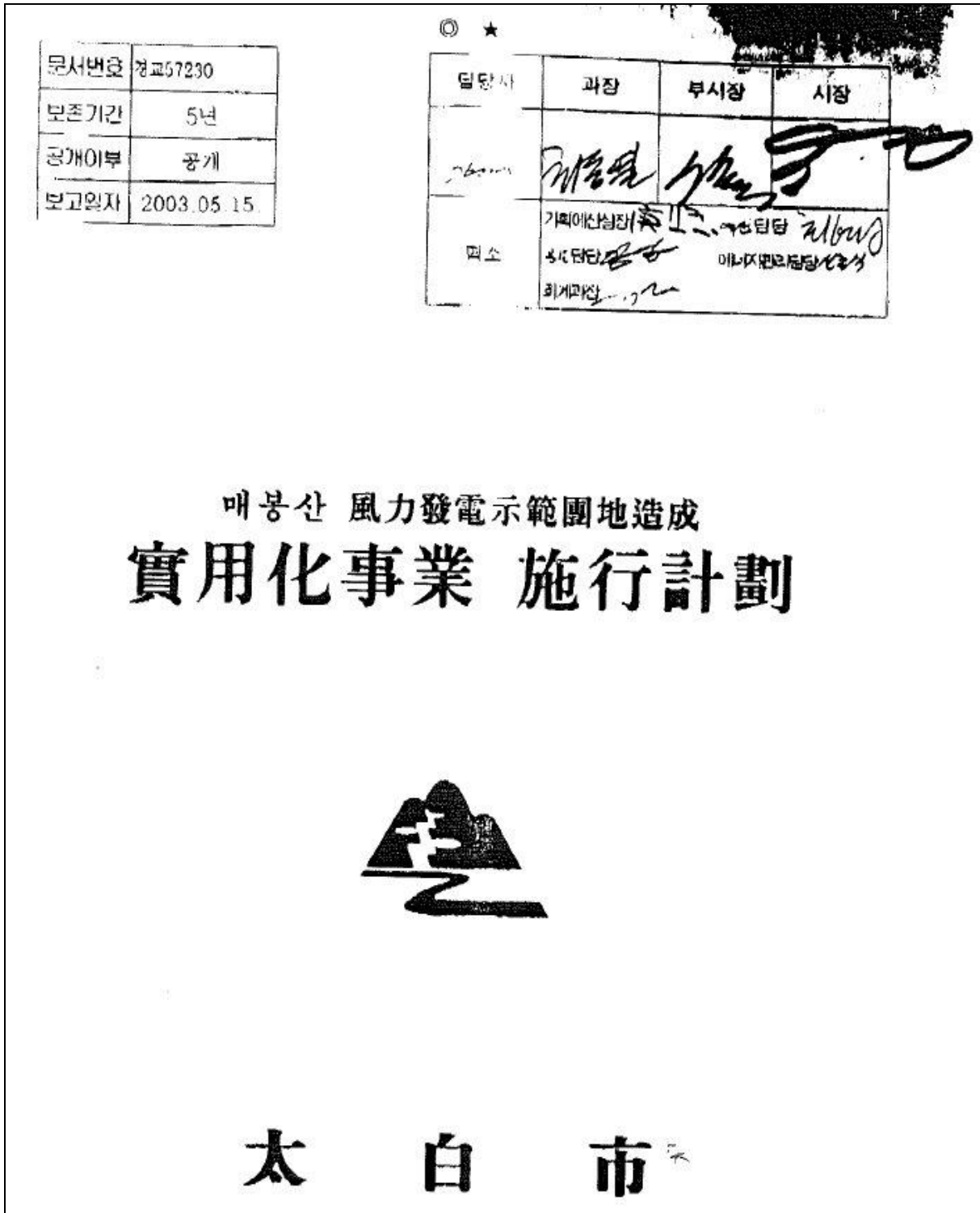


Figure 7 The coverletter of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the original copy)

NO. document	KY57230
A preservation period of document	5 years
Whether or not opening to the public	Yes
Reporting date	2003.05.15

Staff	Manager	Vice-President	President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Tae Baek City

Figure 8 The coverletter of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the translation)

實用化事業 施行計劃

- 2003년도 국비지원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확정된 매봉산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 풍력발전시스템 기종선정, 실시설계, 진입로 정비, 부지확보등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 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함.

■ 實用化事業 概要

- 사업주체 : 강원도 태백시
- 사업규모
 - 설비규모 : 700~900kW급 풍력발전시스템2기 및 부대설비
 - 예산규모 : 30억원(국비21억원, 지방비9억원)
- 사업시행부지 :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원
- 사업시행 근거 : 2003. 지역에너지사업계획 확정(산업자원부)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보조2,100, 자부담900)

■ 細部推進計劃

□ 風力發電시스템 設置機種 選定

- 풍력발전시스템(기종) 제안서 접수
 - 기간 : 2003. 6. 16 ~ 2003. 6. 20(5일간)
 - 대상 : 국내 대행 또는 대리업체 및 자체개발사
 -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제한 : 관련법 적용
 - 방법 : 제안서 접수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공문발송)
 - 내용 : 기종선정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내용
 - 공고(안) 및 제안서 기본형식(안) : 【붙임1】 , 【붙임2】
 - 제안접수 공고 : 2003. 5. 20(화)

Figure 9 The first page of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the original copy)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 For Mt.Maebong a good practice of Wind Power Farm as 2003 local energy project,
- Selecting equipment, design of construction, maintenance of entrance road etc

■ A summary of plan for practical use

- The main organization of the project : Taebaek-si
- The scale of the project
 - The scale of equipment : 700~900kW, wind turbine 2
 - The amount of an estimate : 3 billion won
- The location of the project : Mt.Maebong Changjook-dong Taebaek-si
- The evidence of the project : 2003 local energy project plan

■ Detail plan

- Receiving proposals for Wind Power system from industry company
 - Receiving proposals for Wind Power system
 - Period of receiving : 2003.06.16 ~ 2003.06.20(5 days)
 - Targets : domestic industry company
 - How to receiving : a public announcement
(Internet Homepage, sending official document)
 - Contents : selecting equipment and general things for construction wind power farm
 - A formation of public announcement and proposal : [attach 1], [attach 2]
 - A date of public announcement : 2003.05.20(Tue)
 -

Figure 10 The first page of Mt.Maebong Wind Park Development-Operational Plan (the translation)

Evidence #3 Completing of the first stag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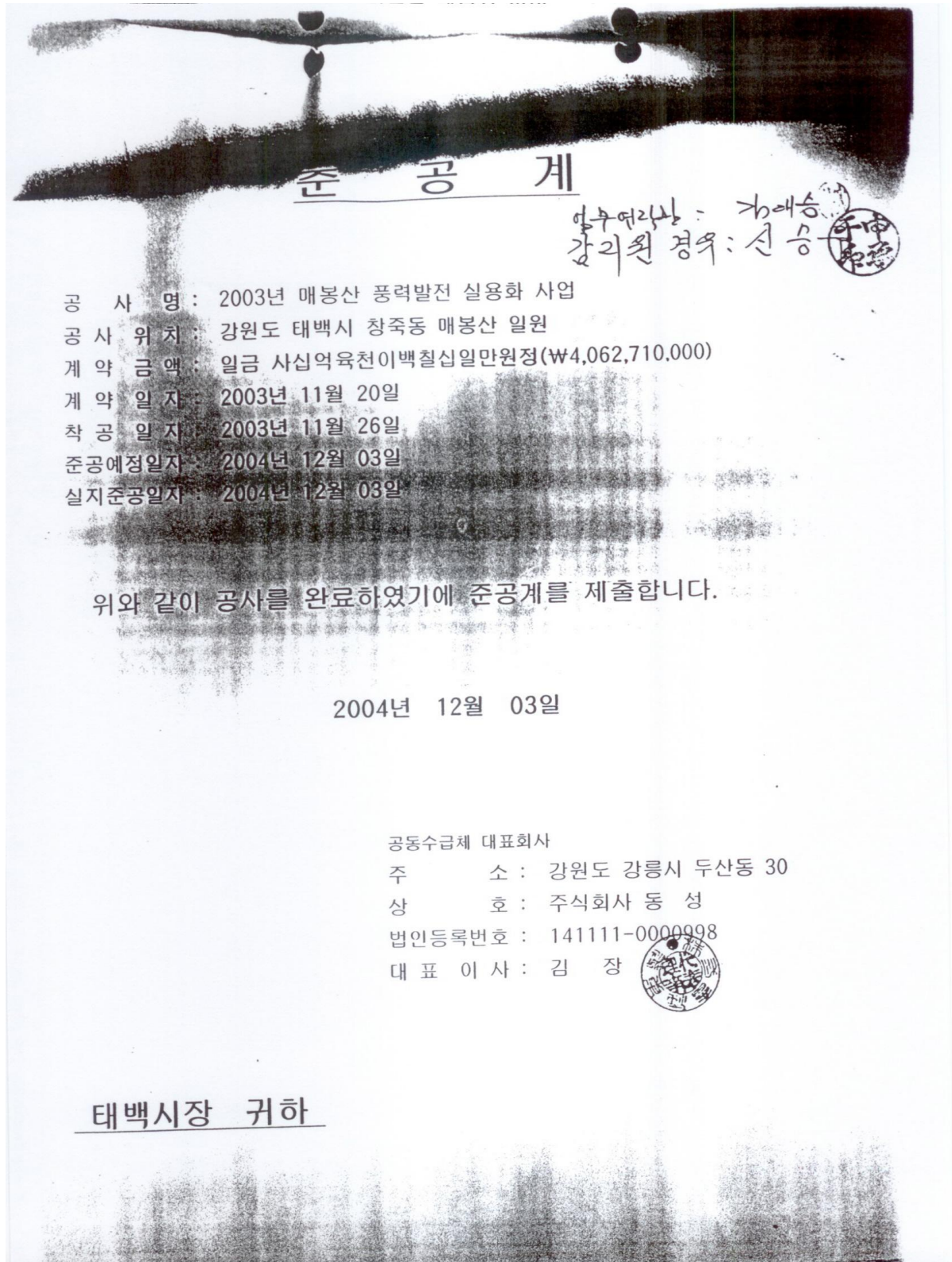


Figure 11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1st construction(the original copy)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Project name : Mt.Maebong windpower project for practical use 2003

Project site : Mt.Maebong Changjuk-dong, Taebaek-si Kangwon province

The earnest money : ₩ 4,062,710,000

Date for contraction : 20 Nov. 2003

Starting date for construction : 26 Nov. 2003

Completing date for construction : 03 Dec. 2004

Ut supra, we submit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ng of construction.

03 Dec. 2004

Address : 30, Doosan-dong, Kangreung-si, Kangwon province

Company name : DONGSUNG Inc.

CEO : Jang-Su Kim signature

To the president of Taebaek City Hall

※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1st construction(the translation)

Evidence #4 Completing of the second stage construction

준 공 계

인 수
공 사 장 이 권
공 사 장 이 권
36 마

공 사 명 : 2004 매봉산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공 사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원
계 약 금 액 : 일금 사십삼억삼천오백일십구만일천원정 (₩4,335,191,000)
계 약 일 자 : 2004년 08월 23일
착 공 일 자 : 2004년 08월 30일
준 공 예 정 일 자 : 2005년 09월 25일
상업운전개시일자 : 2005년 06월 25일
실 지 준 공 일 자 : 2005년 08월 16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05년 08월 16일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30
상 호 : 주식회사 동 성
법인등록번호 : 141111-0000998
대 표 이 사 : 김 장

태백시장 귀하

Figure 12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2nd construction(the original copy)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Project name : Mt.Maebong windpower project for practical use 2004

Project site : Mt.Maebong Changjuk-dong, Taebaek-si Kangwon province

The earnest money : ₩ 4,335,191,000

Date for contraction : 23 Aug. 2004

Starting date for construction : 30 Aug. 2004

Completing date for construction : 25 Jun. 2005

Ut supra, we submit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ng of construction.

16 Aug. 2005

Address : 30, Doosan-dong, Kangreung-si, Kangwon province

Company name : DONGSUNG Inc.

CEO : Jang-Su Kim signature

To the president of Taebaek City Hall

※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2nd construction(the translation)

Evidence #5 Completing of the last stage construction

준 공 계

공 사 명 : 2005년 매봉산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공 사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원
계 약 금 액 : 일금 사십삼억칠백이십삼만칠천원정 (₩4,307,237,000)
계 약 일 자 : 2005년 07월 21일
착 공 일 자 : 2005년 07월 27일
준공예정일자 : 2006년 11월 06일
실지준공일자 : 2006년 11월 06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06년 11월 06일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30
상 호 : 주식회사 동 성
법인등록번호 : 141111-0000998
대 표 이 사 : 김 장 수

태 백 시 장 귀 하




Figure 13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3th construction(the original copy)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Project name : Mt.Maebong windpower project for practical use 2005

Project site : Mt.Maebong Changjuk-dong, Taebaek-si Kangwon province

The earnest money : ₩ 4,307,237,000

Date for contraction : 21 Jul. 2005

Starting date for construction : 27 Jul. 2006

Completing date for construction : 06 Nov. 2006

Ut supra, we submit declaration document for completing of construction.

06 Nov. 2006

Address : 30, Doosan-dong, Kangreung-si, Kangwon province

Company name : DONGSUNG Inc.

CEO : Jang-Su Kim signature

To the president of Taebaek City Hall

※ **The Declaration document of Completion of 3th construction(the translation)**

Evidence #6 Completing of the last stage construction

출장복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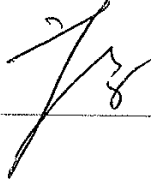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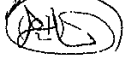
담 당	부 장	실 장
신로권		
<p>1. 출장기간 : 2. 22 ~ 2. 23</p> <p>2. 출 장 지 : 에너지관리공단(강원지사) 및 태백시청</p> <p>3. 출장목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시 매봉풍력단지 CDM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공단과 지자체와의 향후 협력방안 의견 교환 <p>4. 출장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시청과의 CDM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태백시청과 향후 CDM사업 운영추진을 위한 강원지사와의 협의 -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청과의 향후 업무협의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협의 - 향후 계획 수립 - 기타 발전적 방안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복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2월 26일</p> <p>출장자 직 위 팀장 성 명 우재학 (인) </p> <p style="padding-left: 150px;">직 위 대리 성 명 신호철 (인) </p>		

Table 1. The report business trip for proceeding the project as a CDM(the original copy)

Report for business trip

A person in charge	Senior manager	Head of department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p>1. Range of business trip : 2007.02.22 ~ 2007.02.23</p> <p>2. Destination : A branch of KEMCO at Kyoungham & Taebaek City Hall</p> <p>3. Object of business trip</p> <p style="padding-left: 40px;">: a meeting for proceeding the Taebaek wind power project as a CDM</p> <p style="padding-left: 40px;">: collaboration between KEMCO and Taebaek City Hall</p> <p>4. Agenda of meeting</p> <p style="padding-left: 40px;">: action plan for proceeding the Taebaek wind power project as a CDM</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t supra, report business trip</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6th Feb 2007</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Reporter#1 Team Leader Woo Jae-hak signature Reporter#2 Assistant manager Shin ho-chul signature </p>		

Table 2. The report business trip for proceeding the project as a CDM(the translation)

Evidence #7 A meeting for MOU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 CDM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CDM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CDM 사업추진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서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업무위임)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진 자로서 향후 CDM 사업추진, UN 등록 및 배출감축크레딧(CERs) 판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한다.

제4조 (역할)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 CDM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 지역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CDM 사업추진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 CDM 사업추진 및 발생된 CERs 판매
- 태백시
 - CDM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정보 제공
 - 사업추진시 발생된 이익분(예. CERs)의 재투자계획

제5조 (추진절차)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의 CDM사업 추진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한다.

제6조 (비용) CDM 등록 및 온실가스감축크레딧 발행까지의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선 부담하되,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크레딧에서 공제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비용은 양기관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재투자) 추후 CDM 사업등록에 따른 온실가스감축크레딧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판매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하며 이익분에 대한 분배, 재투자방식 및 계획은 양기관의 별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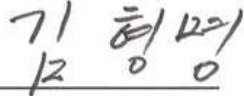
제8조 (정보교류)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수집에 상호 협력한다.

제9조 (조문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시행)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3월 27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 기 섭

강원도 태백시청



태백시장 박 중 기

※ The MOU for proceeding the CDM project between the KEMCO and the Taebaek City Hall (the Original)

The Memorandum for proceeding of the Taebaek windpower CDM Project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CDM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CDM 사업추진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서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3 조 (업무위임)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진자로서 향후 VDM 사업추진, UN 등록 및 배출감축크레딧(CERs) 판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한다.

제 4 조 (역할)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 CDM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 에너지 관리공단

- 지역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CDM 사업추진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 CDM 사업추진 및 발생된 CERs 판매

㉡ 태백시

- CDM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정보 제공
- 사업추진시 발생된 이익분(예. CERs)의 재투자계획

제 5 조 (추진절차) 태백매봉풍력발전단지의 CDM 사업 추진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한다.

제 6 조 (비용) CDM 등록 및 온실가스감축크레딧 발행까지의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선 부담하되,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크레딧에서 공제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비용은 양기관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재투자) 추후 CDM 사업등록에 따른 온실가스감축크레딧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판매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하며 이익분에 대한 분배, 재투자방식 및 계획은 양기관의 별도의 협의하에 결정된다.

제 8 조 (정보교류) 에너지관리공단과 태백시는 제 1 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수집에 상호 협력한다.

제 9 조 (조문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 (시행)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7th Mar 2007

KEMCO

Taebaek city hall

signature

signature

The chief directoro of KEMCO
Yi Ki-sub

The President of Taebaek City
Park Jong-ki

**※ The MOU for proceeding the CDM project between the KEMCO and the Taebaek City Hall
(The essential parts of document were translated)**

Evidence #8 contract between KEMCO & Consulting company

용역 계약서		계약번호 제2007-30호						
		공고번호 제2007-전적10호						
계약자	발 주 처	에너지관리공단						
	계 약 상 대 자	○ 상호 : (주)에코시안 ○ 법인등록번호 : 171711-0050250 ○ 주 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4-1 우림이비즈센터 2차 613호 ○ 전화번호 : 02-890-7565 ○ 대표자 : 은 중 환						
계약내용	용역명	태백매봉 풍력단지 CDM사업 용역						
	계약금액	금 원정 (₩ 원)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원) (종류 : 지급각서, 면제사유 : 이하)						
	지체상금율	0.25%						
	계약기간	2007년 5월 2일 ~ 2008년 4월 30일						
	기타사항	선금 50%, 잔금 50%						
<p>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07. 5. 2.</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에너지관리공단</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이 사 장</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이 기 섭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 약 상 대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에코시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은 중 환 인</td> </tr> </table>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이 기 섭 인	계 약 상 대 자	(주)에코시안	은 중 환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이 기 섭 인						
계 약 상 대 자	(주)에코시안	은 중 환 인						

※ The Contract between the KEMCO and ECOSIAN CO., Ltd(the Original)

The Contract document		계약번호 제 2007-30 호
		공고번호 제 2007-견적 10 호
계약자	Contractor	KEMCO(Korea Energy Management COporation)
	Covenantee	ECOSIAN Co., Ltd
계약내용	Project name	Taebaek windpower project
	계약금액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종류: 지급각서, 면제사유 : 이하)
	지체상금율	0.25%
	계약기간	2007 년 5 월 2 일 ~ 2008 년 4 월 30 일
	위 치	
	기타사항	선금 50%, 잔금 50%
<p>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 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 부 3. 과업내용서 1 부 4. 산출내역서 1 부 5. 청렴계약 특수조건 1 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부</p> <p style="text-align: center;">2 May 2007</p> <p>KEMCO The Chief Director Yi Ki-sub signature</p> <p>ECOSIAN CO., Ltd CEO Eun Jong-hwan signature</p>		

※ The Contract between the KEMCO and ECOSIAN CO., Ltd
(The essential parts of document were translated)

Evidence #9 contract between the KEMCO & the Validator

계 약 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타당성평가(이하 "심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협약한다.

제 1 조 (심사목적)

1.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심사는 UNFCCC의 CDM 사업 등록을 목적으로 하여, 갑의 (태백 풍력 발전 CDM 사업 등록)사업에 대한 PDD의 내용이 관련된 CDM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심사는 갑의 PDD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사항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사업이 CDM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UNFCCC에 CDM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2 조 (심사기준)

1. 을이 실시할 심사의 기준은 UNFCCC의 CDM 등록요건이다.
2. UNFCCC의 CDM 등록요건은 CDM 요구사항, 현재의 ANNEX, COP/MOP의 결정사항 및 부최국의 관련 법률이다.

제 3 조 (심사 범위, 비용)

1. 본 계약에 의한 심사의 범위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준한다. 단,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심사 범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되어 조정된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심사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계약기간은 2007. 6. 20일 부터 2007. 11. 30일까지로 한다.
3. 심사비용은 원(W 원) (부가세 포함)이며, 검사완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25%로 한다
4. 심사비는 심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진행 결과(심사일수, 출장지 등)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의 수행)

1. 심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심사 있어서 을은 심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2. 심사의 제한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의 문서 또는 정보의 취득, 관계지역의 출입, 관련인원의 면담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갑은 이를 보장한다.
3. 심사의 진행
갑은 갑의 대표를 대리하는 진행자를 지정하여,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조한다.
4. 심사의 지연
갑은 심사 중 발생하는 모든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이를 즉각 해소할 것을 보장한다.
5. 심사의 한계
을은 갑이 작성한 PDD에 중요한 오류나, 왜곡이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심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심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오류나 왜곡이 발견되지 않고 계속 상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제 5 조 (기밀의 보호)

올은 심사 중 취득한 갑의 사업상 기밀사항과 문서 등에 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여 보호함을 보장한다. 다만, 법률로서 요구되거나 UNFCCC의 요구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올은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불만의 처리)

갑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만을 문서로써 올에게 제기할 수 있다. 올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분쟁의 해결)

갑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이 상호간에 해결되지 않거나 상호권리에 대한 법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제 8 조 (심사의 책임)

PDJ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고, 올의 책임은 이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있다.

제 9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서는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갑이 올에 인증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다. 단,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 갑은 올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올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에 올은 이미 영수한 보수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갑 또는 올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연락, 통지의 수단)

갑과 올은 상호간에 요구되거나 통지되어야 할 사항은 문서 또는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은 송신자 측이 부담한다.

별첨 : 과업지시서 1부.

(갑) 계약자

(을) 계약상대자(CDM/DOE 기관)

직 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직 위: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이사장

성 명: 이 기 섭 (인)

성 명: 김 우 현 (인)

일 자: 2007. 6. 20.

일 자: 2007. 6. 20.

※ The Contract between the KEMCO and the KFQ(the Original)

Contract for validation of Taebaek Windpower Project

KEMCO(Korea Energy Management COporation)과 KFQ(Korean Foundation for Quality)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타당성평가(이하 “심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협약한다.

제 1 조(심사목적)

1.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심사는 UNFCCC에의 CDM 사업 등록을 목적으로 하여, 갑의 (태백 풍력발전 CDM 사업등록)사업에 대한 PDD의 내용이 관련된 CDM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심사는 갑의 PDD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사항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사업이 CDM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UNFCCC에 CDM 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2 조(심사기준)

1. 을이 실시할 심사의 기준은 UNFCCC의 CDM 등록요건이다.
2. UNFCCC의 CDM 등록요건은 CDM 요구사항, 현재의 ANNEX, COP/MOP의 결정사항 및 주최국의 관련 법률이다.

제 3 조(심사범위, 비용)

1. 본 계약에 의한 심사의 범위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준한다. 단,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심사범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되어 조정된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심사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계약기간은 2007.06.20일부터 2007.11.30일까지로 한다.
3. 심사비용은 원(W 원)(부가세포함)이며, 검사완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25%로 한다.
4. 심사는 심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진행 결과(심사일수, 출장지 등)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심사의 수행)

1. 심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심사에 있어서 을은 심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2. 심사의 제한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의 문서 또는 정보의 취득, 관계지역의 출입, 관련인원의 면담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갑은 이를 보장한다.
3. 심사의 진행
갑은 갑의 대표를 대리하는 진행자를 지정하여,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조한다.
4. 심사의 지연
갑은 심사 중 발생하는 모든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이를 즉각 해소할 것을 보장한다.

5. 심사의 한계

을은 갑이 작성한 PDD에 중요한 오류나, 왜곡이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심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심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오류나 왜곡이 발견되지 않고 계속 상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제 5 조(기밀의 보호)

을은 심사 중 지득한 갑의 사업상 기밀사항과 문서 등에 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함을 보장한다. 다만, 법률로서 요구되거나 UNFCCC 의 요구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불만의 처리)

갑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만을 문서로써 을에게 재기할 수 있다. 을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 7 조(분쟁의 해결)

갑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이 상호간에 해결되지 않거나 상호권리에 대한 법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심사의 책임)

PDD 를 적정하게 작성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고, 을의 책임은 이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있다.

제 9 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서는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갑이 을에 인증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다. 단,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제 10 조(계약의 해지)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에 을은 이미 영수한 보수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연락, 통지의 수단)

갑과 을은 상호간에 요구되거나 통지되어야 할 사항은 문서 또는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은 송신자 측이 부담한다.

Contractor

The Class : the Chief Director of KEMCO
Name : Yi Ki-sub
Date : 20th JUN 2007

Covenantee

The Class : the Chief Director of KFQ
Name : Kim Woo-hyun
Date : 20th JUN 2007

**※ The Contract between the KEMCO and KFQ
(The essential parts of document were translated)**